

河川行政方向

— 앞으로의 河川行政課題를 中心으로 —

尹 錫 吉

<本協會理事·建設部 水資源局開發課長>

<目 次>

1. 序 論
2. 新河川法의 主要骨子
3. 治水投資의 基準確立問題
4. 都市周邊河川의 整備問題
5. 河川骨材採取와 河床安定計劃
6. 內水處理
7. 河水統制
8. 結 言

1. 序 論

1971年度는 우리나라 河川管理制度의 改善에 있어서 一大轉機를 이룩한 해라고 볼 수 있다.

왜그러나하면 過去의 治水爲主의 河川法을 全面改正하여 治水와 利水가 調和된 新管理體制의 新河川法 및 同法施行令을 公布하였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河川法은 1927年 1月 22日 制令 第2號로 總則, 河川의 管理, 河川의 使用 및 河川附近에 關한 制限, 河川에 關한 費用 및 河川으로부터 生기는 收入 監督, 補償 및 裁定, 罰則等を 包含한 47條로된 朝鮮 河川令을 制定하고 1927年 5月 7日 府令第45號로 同河川令을 1927年 6月 1日부터 施行하도록 함으로서 發効하게 되었었다.

同時에 58條로 된 河川令施行規則이 河川令과 同日 자로 發効하게 되었다.

施行途中 即 1930年과 1938年에 若干의 改定이 있었으나 이 法令이 解放後까지 그대로 適用되어오다가 革命後 法令一齊整備時 이를 調整補完하여 1961年 12月 27日 法律第892號로써 河川法을 公布하였고 1963年 12月 5日 法律第1475號로써 一部改正되었고 1968年 時代

의 變遷에 即應하기 위하여 河川法을 全面改定 國會에 提案하였으나 後 國會에 繫留되었다가 1970年에 國會의 通過를 보아 1971年 1月 19日 이를 公布하였고 1971年 7月 19日부터 發効하기에 이르렀다.

新河川法의 基本理念은 提案理由에서 明示된 바와같이 現行河川法은 制定當時 河川荒廢에 基因한 洪水防禦을 위한 強力한 治水上의 要請을 背景으로 治水中心으로 規制되어 있어 오늘날의 社會經濟發展과 人間活動의 向上 및 擴大에 따른 農業, 工業, 生活用水 및 發電等 物需要增加와 河川汚染防止, 景觀保持等に 對處할 수 있는 近代의 治水 및 利水法規로 體制를 整備하고 效率의 河川의 開發管理에 必要한 制度的 未備點을 補完하여 그 管理의 近代化를 圖謀함으로써 國土의 保全과 開發 및 利用을 通하여 民生의 安定, 產業基盤의 造成, 生活環境의 整備에 寄與코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新河川法의 主要骨子は 다음에서 說明하겠지만 政府에서 河川管理體制의 整備 및 新制度의 運用等に 對하여 여러가지 施策이 講究中에 있을 것으로 思料되나 新河川法의 基本理念을 實現하고 時代의 要請에 即應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繼續하여 研究檢討發展시켜야 할 重要한 課題가 많다고보며 問題의 解決이나 새로운 施策推進에는 果敢하고 決斷性이 있어야 하며 問題들 깊이 파고들어간 技術的인 所信이 要求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法律的으로나 制度的으로 整備가 되었다 하더라도 河川行政이 이를 뒤따르지 않으면 實効를 거둘수가 없으며 水系를 一貫하여 綜合的으로 管理하기 爲하여는 制度面뿐이 아니라 計劃이나 技術的인 面에서도 새로운 開拓과 發見을 해나갈 必要가 있다고 본다.

新河川法을 施行함에 있어서 河川管理廳은 새로운 方向의 河川行政을 確立하기 爲하여 努力하고 있을 것이지만 實際面에 있어서 河川에 關한 問題는 社會的인 面

과 經濟的인 面뿐이 아니라 自然現象等 여러面에 걸쳐 關係가 깊으며 또한 이것들이 서로 얽혀서 問題를 複雜하게 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第1,2次 經濟開發 計劃을 통하여 飛躍的인 經濟發展을 하고 있고, 世界的인 흐름이지만 여러 計劃이 10年이나 20年 甚至於는 50年後의 未來社會의 vision이 오늘날의 問題로서 檢討되고 있는 段階에 있으므로 河川行政도 例外가 될 수는 없으며 社會經濟의 發展에 발맞출 必要가 있다는 것은 再言을 要치 않을 것이다.

옛날부터 實施해 내려온 洪水防禦를 中心으로한 治水行政外에 自然河川을 어떻게 하면 有效適切하게 利用하고 管理할 수 있느냐 하는 積極的인 姿勢가 必要하다고 본다.

이와같이 앞을 내다보는 河川行政, 산 河川行政, 어디까지나 國民의 利益을 追求할 수 있는 河川行政 公共秩序를 維持하기 위한 河川行政으로서 檢討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여온 問題點들을 本人이 過去2年餘 河川管理를 擔當하였던 經驗을 살려 여기에 紹介코져 한다.

2. 新河川法の 主要骨子

1961年 7月 15日 法律第659號 舊法令整理에 關한 特別措置法에 依據 朝鮮河川令을 整理代替한것이 1971年 8月까지 使用해온 舊河川法(9章 75條 附則)을 8章 86條 附則으로 改正한 것이며 그 主要骨子は

가. 舊法에서 河川區域은 法第12條에 明示된바와 같이 管理廳이 認定告示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新法에서는 그 定義를 法定化하여 河川區域等の 確認節次없이 自然狀態 그 自體로서 河川區域이 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舊法 第4條 新法 第3條에서 “河川은 이를 國有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음으로 河川區域이되면 私權이 排除됨으로 私有財產權과 密接한 關係가 있기 때문에 管理廳의 河川區域認定行爲에 있어서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었다. 一但 河川管理廳이 河川管理의 必要에 의하여 舊法施行令 第8條2項의 規定에 依據 認定告示를 하면 必然的으로 河川區域으로 認定된 土地所有者는 法庭鬭爭을 惹起시켰던 것이나 앞으로는 河川區域의 確認節次없이 自然的인 狀態 그 自體로서 河川區域이 明確해지는 것이다.

나. 區間主義河川管理制度의 短點을 是正하여 水系를 一貫한 河川의 效率的인 管理와 計劃的인 綜合開發을 爲하여 河川管理廳은 河川整備基本計劃을 樹立하여 實施하도록 하였다. 河川整備基本計劃에 收錄해야 할 事

項은 河川法 施行令 第11條에 明示하고 있으나 河川法 第11條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同一水系에 2~3個의 河川管理廳이 存在하게 됨으로 水系를 一貫한 單一整備基本計劃作成을 爲하여는 建設部長官이 河川整備基本計劃을 定하도록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 河川管理廳에서 指定하는 隣接區域內에서 河川流量에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는 地下流水의 採取는 管理廳의 許可를 받도록 規制하고 있다.

이것은 特히 安養川邊의 地下水採取와 같이 堤防바로 앞에서 無秩序하게 伏流水를 取水함으로 해서 實質的으로 河川流水를 引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기때문에 河川流水의 經濟的 配分을 爲하여 이같이 規制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渴水量이 不足하거나 水利權者相互間의 水利使用侵害로 紛爭이 있을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管理廳의 職權으로 水利使用을 調整 또는 制限할 수 있도록 條項을 新設하였고,

마. 既得水利權者의 權利를 保護하기 爲하여 新規水利權을 許可함으로 해서 損失을 받게됨이 明白한 權利者가 있으면 利害關係人의 同意를 받도록 規制하고 있다.

바. 댐 등 河川施設物이 날로 增加함에 따라 發生할 것으로 豫想되는 河川人工災害를 事前에 徹底히 防止하기 위하여 觀測施設 등 댐 施設로 인한 災害發生의 防止와 輕減에 必要한 施設을 設置함은 勿論 管理規程을 만들어 管理廳의 承認을 받도록 規制하고 있다.

사. 河川工事由 因하여 생긴 廢川敷地를 國有財產法에 依하여 國稅廳에서 處理하고 있던 것을 市長, 道知事에게 讓渡할 수 있도록하여 그 賣却代와 河川占用料 使用料 등 河川有關歲入을 河川管理에만 使用토록하여 河川改修 및 管理의 財源을 擴大토록 하고있다.

아. 河川管理의 徹底를 期하기 爲하여 被許可者가 管理廳이 許可條件으로 指定한 期日안에 實施計劃認可를 申請하지 아니하거나 工事着手 또는 竣功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自動的으로 効力이 喪失되도록 規制하고 있다.

3. 治水投資의 基準確立問題

河川行政의 目的은 河川法第1條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같이 “河水로 因한 被害를 豫防하고 河川使用의 利益을 增進시키기 爲하여 河川의 指定, 管理, 使用 및 保全과 費用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河川管理의 適正을 期하며 公共福利의 增進에 寄與하게 함에 있다” 이와같은 河川管理의 目標은 過去나 또한 將來에서도 變함이 없을 것이며, 問題는 어떻게 時代的인 感覺에

맞는 規模로 目標에 Approach 하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리 意慾적이고 훌륭한 計劃이라 할지라도 現在나 將來의 우리나라 經濟水準이나 財政規模側面에서 볼 때 距離가 멀다고 하면 그 計劃은 畫中之餅에 지나지 않으며 成功率는 稀薄하다.

아무리 治水事業이 國民의 民生安定을 爲한 國家의 固有義務라고 할지라도 治水投資의 經濟的妥當性을 無視하거나 社會, 經濟의 發展段階를 無視하고 治水事業 規模를 論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治水事業長期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는 蒙利面積이나 保護家屋을 推算하여 이것을 唯一한 根基로 삼고 있으며 每年 實施하게 되는 年度事業計劃은 長期計劃下의 投資優先順位에 原則을 두어야 할 것이나 現實은 그렇지 못하여 經濟分析에 依하여 投資規模나 順位를 根據로 樹立된 長期計劃도 없거나 年度計劃도 그때 그때의 環境에 支配를 받아 內容이 決定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 어찌할 수 없는 現實이라 하겠다. 長期計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四大江流域綜合開發計劃(1971~1981)에 395億원을 投資하여 2,500km를 改修하도록 되어있고 國土建設綜合計劃(1972~1981)에는 3,233km를 改修하도록만 策定되어 있어 이것이 國民經濟의 發展이나 財政規模 經濟的 妥當性等이 어느程度 加味된 計劃이나 하는 것이다.

治水事業의 長期計劃을 設定함에 있어 投資規模나 投資順位를 決定하는 重要한 基準으로 經濟的判斷이 必要하게 된다. 換言하면 몇년에 한번오는 洪水를 對象으로 堤防을 만들 것이나 하는 것은 그 當時의 國民經濟와 直結되는 問題이기 때문이다. 勿論 治水投資規模를 決定함에 있어서 經濟效果의 多小에 단 依存할 問題가 아니라 治水事業의 目的을 불문 人命과 財產, 生産活動等을 水害로부터 保護하여 民生安定을 期하는 것이 國家의 國民에 對한 義務이므로 經濟效果에 구애 없이 決定할 수 있다는 意見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事實 現在의 水害被害額은 物的인 被害와 直接的인 被害額만을 갖고 集計되고 있다. 年平均 63億원의 被害額外에 年平均死亡人數가 257名이며 水害가 날 때마다 罹災民은 數萬名乃至 數十萬名에 達하고 있으며 生産活動의 中止等으로 因한 間接被害額은 數字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想起할때 理由있다고 할 수 있으며 直接效果만으로 決定된다고 할 수 있는 投資規模는 不合理한 要素를 內包하고 있는 問題點이 있다.

그러나 經濟效果를 治水投資의 規模를 決定하는 重要한 因子로서 使用하기 爲하여는 治水事業의 重要度, 效果의 範圍, 經濟調查 및 分析方法을 研究究明할 必

要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計劃期間中の 投資規模를 어떠한 方向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問題를 生覺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水系別로 河川整備基本計劃이 必要할 것이다 이것은 過去의 洪水處理方向은 어떻게 하면 洪水를 迅速히 바다로 흘려보내느냐 하는 主眼點에서 處理되었으나 現在는 利水와의 調和때문에 댐設置가 不可避하게 되었고 댐이 建設되는 以上은 洪水處理를 댐과 河道가 分擔處理하는 것이 經濟적이고 合理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河川法 第15條에서도 管理廳은 河川整備基本計劃을 定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管理廳은 早速히 本基本計劃을 定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治水事業의 目標은 앞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河川의 安全度を 높이고 水害를 除去하는데 있으므로 그 安全도는 經濟의 發展에 따라 定하도록 考慮해야 할 것이다. 即 國民所得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生活이 向上되면 될수록 人命이 貴重해질수록 安全性에 對한 國民의 要求는 커질것이 分明하다.

지금까지의 洪水處理計劃에서는 都市附近의 重要河川에서 80年乃至 100年 頻度の 洪水를 對象으로 河川改修를 하여왔으나 現在는 이미 人口가 密集되어 있는 大都市附近의 河川에 있어서는 200年頻度の 洪水를 對象으로 하는 計劃이 要求되고 있다는 事實은 上記理論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을 貫流하는 漢江下流部の 경우 36,000m³/sec를 對象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140年 頻度の 洪水인데도 더욱더 安全한 方向으로 洪水處理를 하기 爲하여 昭陽江댐에 依한 洪水調節效果는 餘裕量으로서 生覺하고있고 將次 忠州댐을 建設하여 洪水調節效果를 더욱 期待하고 있다는 것은 將次 國民이 要求하는 安全도에 對備하기 爲함이다.

如何든 現時點에서 長期計劃을 確定하고 效果의인 投資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이렇게 하기 爲하여는 于先經濟效果의 測定技術을 發展시켜 長期計劃設定의 指針으로 삼어야 할것으로 生覺된다.

4. 都市周邊河川의 整備問題

우리나라의 急速한 經濟發展과 併行하여 急激히 增加하는 都市人口의 集中은 크나큰 社會問題의 하나이다.

政府에서는 이를 抑制키 爲하여 工場의 地方分散政策을 그린벨트의 設定等 積極的인 抑制策을 쓰고 있으며 國土開發綜合計劃에서도 서울市 人口를 1981年度에 630萬名으로 制限하는 등 人口의 都市集中化防止에 重

點을 두었다는 痕跡이 明白히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人口의 都市集中現象이 나타나면 市街地의 急激한 膨脹과 同時에 土地의 利用形態가 急激히 變化하여가고 土地의 價値上昇으로 因하여 河川低地帶의 土地利用度가 높아가기 마련이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過去遊水池로서 役割을 하여 오던 河川敷地가 關係法規를 앞세워 侵食當하기 마련인데 遊水池가 줄면 比例의으로 洪水의 頂點流量이 커지기 마련이다. 頂點流量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安全度가 減少하게 됨으로 이에 對한 對策이 必要하다

이와같은 “붐”을타고 盛行한것이 河川區域內的의 公有水面埋立事業인데 이것은 주로 서울市管內的 漢江邊에 集中하였다.

漢江下流部만하드라도 約 3,000,000坪에 達하고 있음으로 結局 3,000,000坪 以上の 河川遊水池가 減少되었다는 結論인 것이다.

이와같은 問題에 對한 對策으로서는 前章에서 言及한 理論外에 河床安定과 河道維持等 地形의인 與件과 技術的인 條件을 充分히 加味한 方策을 樹立하여 社會發展에 即應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河川管理者의 義務며 責任일 것이다.

上記方策은 開發方向이나 開發限界等の 設定이고 이 計劃은 水理模型實驗等을 通하여 技術的인 未備點을 補充하여야 함은 再言을 要치않으나 더욱 問題가 되는 것은 이러한 限界線이나 開發方向을 設定해 놓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것을 固守하느냐 하는 것이다.

一般으로 弱한 位置에 놓여있는 것이 技術者의 立場임으로 徹底한 河川管理를 하기 爲하여는 河川管理를 맡은 實務者는 강한 意志와 覺悟가 必要하다.

또한 公害問題로서의 都市河川의 汚染對策도 重要하며 都市河川의 敷地를 整備하여 都市의 美觀을 높이고 市民의 休息處로서 또는 리크레이션을 즐길수 있는 場所로서 利用할 수 있도록 하는것은 今後의 河川行政의 重要한 課題의 하나가 아닌가 生覺된다.

5. 河川骨材採取와 河床安定計劃

各種建設工事 또는 埋立工事が 活潑하여 감에 따라 都市周邊河川은 治水, 利水上 또는 生命保護上 크나큰 問題點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事實이며 이것은 河川管理上 重要한 問題로서 하루빨리 이에 對한 對策樹立이 要望된다.

建設이 活潑하여가면 갈수록 建設工事に 없어서는 안될 基礎資材인 모래, 자갈의 需要는 增加一路에 있으며 이 資材의 供給源이 河川이므로 河川管理와 建設

工事, 兩쪽을 滿足시킬 수 있는 對策이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이웃 日本國의 例를 살펴보면 1965年度의 콘크리트 用骨材所要量이 3億5千萬톤이며 1970年度는 5億2千萬톤으로增加한데 對하여 全國 主要水系(176水系對象)의 掘削可能量은 6億1千萬톤에 不遜하다는 判斷이 나왔으므로 이레로 放置한다면 河川管理上 또는 保全上은 勿論 建設工事 等에도 莫大한 支障을 招來할 것이라는 判斷下에 日本政府는 緊急河川砂利對策을 講究하여 治水利水의 機能을 維持하면서 圓滿한 砂利供給을 期하기 爲하여 官民合同으로 砂利對策協議會를 設置하였으며 砂利對策의 基本의 方向을 定한 “河川砂利基本對策要綱”을 策定하고 이 要綱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取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都市周邊의 河川에서는 거의 全般的으로 骨材採取를 하고 있으며 保全上問題點은 제쳐놓고라도 骨材採取後의 事後整理未備 即 웅덩이를 그대로 放置함으로써 少年들이 溺死하는 事故가 續出하여 社會的인 問題點으로 擡頭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骨材需要를 想定해본結果 細骨材는 1980年代까지는 別支障이 없다고 判斷되나 粗骨材의 경우는 現埋藏量이 約 93百萬 m³이며 여기에 每年 流砂量을 勘案한다 하더라도 1975年 以後에는 過去 數年 동안의 建設분이 그대로 持續된다면 地域的으로 徐徐히 粗骨材의 不足現象이 나타날것으로 내다보인다.

특히 서울周邊만 보더라도 漢江下流部에 있어서 서울市의 骨材採取許可下에 41臺의 DRAGER가 年中 採取해내는 外에 各地區埋立을 爲한 河道掘鑿이 盛行하여 極甚한 河床變動을 가져오게 되었다.

即 大略 蘭芝島附近으로부터 八堂岾 地點까지 52km 區間을 살펴보면 1966年을 境界로하여 그以前은 平均 河床高가 約 4cm씩 上昇하여 年間 256萬 m³의 土砂가 堆積되어 오던것이 1966年以後로는 建設工事が 活潑하여 骨材需要의 急增 江邊道路建設, 沿岸埋立으로 因한 河床掘착 등으로 河床은 急激히 低下하게 되었다.

一 例를 들면 汝矣島 앞 河床高가 (+)8m에서 (+)3m로 5m 低下하였고 西水庫 앞 河床이 亦是 (+)8m內 外에서 (+)3.5m 程度로 낮아졌다.

이 區間의 埋立工事に 因하여 1967年以後에 파낸 土量이 約 3,500萬 m³ 이니 年間平均 約 700萬 m³를 파낸 셈이 되며 이로인한 平均河床高가 約 30cm~50cm 低下한 것으로 判斷된다.

以上の 例에서 明白하여진 바와같이 將來를 내다본 骨材需給과 河道安定을 調和시킬 수 있는 對策樹立이 時急하다할 것이며 이것은 河床安定計劃과도 直結되는 問題이다.

6. 內水處理

河川改修가 進展됨에 따라 또는 低地帶의 土地利用이 高度化하여감에 따라 內水處理問題가 問題點으로 擡頭하게 되었다.

即 洪水時 本流의 水位가 높아감에 따라 支流의 물이 빠지지 않게 됨으로 自然 低地帶는 浸水를 當하게 되고 都市나 農村이나 이로 因한 被害는 날로 增加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특히 都市內에 있어서 本流나 支流에 流入하는 小河川에 쓰레기 등을 버림으로써 河積의 減少, 排水門維持管理의 不徹底, 施設의 未備 등으로 內水被害는 極甚하다.

따라서 4大江流域綜合開發 計劃에서도 이 內水處理 計劃을 다루었으며 4大江流域內에 內水被害常習地區가 138個地區 20,754ha가 있어 52億을 投資 이를 一掃하도록 計劃되었으나 여기에 都市內排水는 包含시킬 수가 없었다.

이와같이 內水對策 方法은 排水門과 遊水池를 設置하여 排水펌프를 併用하는 方法과 排水樋門만 設置하여 自然排水 시키는 方法이 있는데, 現在의 內水被害常習地는 大部分이 機械排水해야 할 立場임으로 比較的 많은 投資를 해야하는 問題點이 있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必要하다고 느끼고 있을뿐 이러한 投資效果에 對하여 檢討해본 일이없고 또한 調査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檢討에 必要한 資料도 없는 것이 事實이다

이와는 反對로 生活水準이 向上됨에 따라 地域住民은 內水對策에 對한 要請이 커질것이 分明함으로 아직 손을 빠치지 않은 이 分野에 對하여도 積極의인 對策이 樹立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7. 河水統制

河川管理는 公共의安全을 保持하고 同時에 公共의 福祉를 增進시키는 二大目標을 잡고 있다고 할수있으며 公共의 安全을 保持하기 爲하여는 洪水로부터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여야하며 公共의 福祉를 增進시키기 爲하여는 流水의 正常的인 機能을 維持시켜 河川이 適正하게 利用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河川이 適正하게 利用되도록 管理한다는 것은 上水道 또는 工業用水, 灌溉, 發電등을 爲한 河川流水의 利用 其他舟運等에의 利用等에 寄與하는 것이며 流水의 正常的인 機能을 維持시킨다는 것은 河口의 維持, 河川清潔의 保持, 鹽害의 防止, 既得水利權의 取水 또는 舟運을 爲

한 必要水位의 維持, 河川管理施設의 保護 等を 말하는 것이다.

河川의 正常的인 機能을 維持시키기 爲하여 必要한 流量을 維持用水라고 하는데 이 維持用水를 確保하고 앞으로의 用水需要增加에 對備한 用水確保를 爲하여 新規水源의 開發도 絶對 必要하지만 現河川流水를 經濟的이고 效率的으로 利用하기 爲한 河水統制도 絶對 必要하다고 본다. 아무리 巨額을 投資하여 댐을 建設하고 新規水源을 確保한다 하더라도 이를 效率的으로 配分利用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投資效果는 減少하기 때문이다.

經濟가 發展하고 國民生活水準이 向上되고 工場이 늘어나고 灌溉施設이 擴張됨에 따라 過去 自然流況만 으로 充足되여 오던 各種用水가 甚한 不足現象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不足現象의 幅은 날로 擴大될것이 豫想됨으로 經濟展望에 立脚한 上水道, 工業用水施設의 擴大, 水利不安全畚으로부터 水利安全畚으로 轉換함에 따른 水利施設의 擴張 等を 考慮하여 1981年度의 用水所要量을 把握코져 想定한 結果 年間 176億톤의 물이 必要하다는 結論이 나왔다.

現河川에서의 利用可能量을 84億톤 程度로 推算됨으로 水資源開發을 하지 않고 放置하는 境遇 1981年度에 는 約 92億톤의 用水가 不足되게 된다.

이와같은 現在 및 將次의 問題에 對備하기 爲하여 政府에서는 水資源開發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事實이지만 이 水資源開發에는 적어도 調査設計에 5年建設에 5年하여 最小限 10年以上의 長時日이 所要되게되고 또한 莫大한 財源이 必要하게 됨으로 即興的으로 對策을 講究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將來를 正確히 展望하여 段階的으로 開發해 나가기 爲하여 事前에 充分한 調査와 計劃이 必要하다 여기에서 當場 河水統制와 問題가 되는것은 水利權의 許可와 既得水利權의 保護이다. 水利許可權을 掌握하고 있는 河川管理廳이 現在의 既得水利權이나 價行水利權을 어떻게 保護해 나갈것이며 上水道擴張, 工場建設에 따른 工業用水, 水利施設擴張에 따른 灌溉用水 등의 新規水利權要請에 對하여 어떠한 方向으로 어떠한 方針下에 어떻게 對處해 나아가는나하는 問題이다.

이것은 國民生活 또는 經濟發展과 直接的인 關聯이 있는 問題들이기 때문에 慎重하고 計劃性있게 效率的으로 處理되어야 할 問題이다.

이와같이 效率的으로 水利權이 處理되기 爲하여 先行되어야 하는 것이 廣範圍한 利水現況調査이다.

그 理由로서는 첫째로 全國的으로 價行水利權이 어느 程度이며 地點別로 河川別로 所要水量이 어느 程度

이나 하는것을 알 必要가 있다.

慣行水利權이라는 것은 農業用水로서 代代로 使用해 내려오는 許可節次를 取하지 않은 水利權으로서 朝鮮 河川令 施行當時에도 附則에 “從前의 法令에 있어서 許可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本令施行時 現在 河川 또는 河川附近의 土地에 있는 施設로서 本令에 따라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할것은 本令에 依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看做한다”로 明白히 規定하고 있고 民法第232條에도 用水權을 保護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河川管理廳은 勿論 이 慣行水利權을 保護해야할 義務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水利權의 分布와 量을 把握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河川에서의 取水現況調査이다. 이것은 河川法에 依한 許可를 받은 灌溉用水, 上水道用水, 工業用水 및 其他用水等 外에도 無許可로 揚水場, 沓等を 設置하여 取水하고있는 事例가 많기 때문에 許可, 無許可를 莫論하고 河川에서 取水하고 있는 것은 年間使用總量 期間別使用量 秒當最大使用量 施設容量 許可量 實際使用量 對象面積 등을 細密하고 正確하게 調査하여 分析하여야 한다.

上記調査는 많은 時間과 豫算이 必要하기 때문에 財政形便上 그 概略이나마 把握하고자 各市道의 行政系統을 通하여 報告集計하였으나 別로 믿을만한 것이 못 된다고 判斷되어 參考가 되지 못하였다.

다음에 調査되어야할 것이 利用可能水量이다. 都大體, 우리國土에서 어떠한 人工의인 施設을 加함으로써

利用할 수 있는 量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것이다. 이것은 土木技術이 發達할수록 그可能量은 增加하게 될 것이다.

以上 言及한 調査內容을 통털어 本人은 廣域水利現況 調査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調査야말로 河川의 適正한 利用을 하기爲하여 또는 經濟的인 河水統制를 하기爲하여 必要不可缺한 것이라 믿는다.

이와같은 調査는 細密한 調査要領을 마련하고 年次的으로 計劃性있게 推進되어야하며 早速히 實行되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河川管理廳으로서는 어떻게하면 既得水利權의 保護나 新規水利權의 許可等を 마찰없고 調和를 이룩할 수 있도록 處理할 것이며, 河水統制를 如何히 할 것이냐. 물管理를 制度面에서 어떻게 改善해 나갈 것이냐. 하는 問題는 時急하고도 가장重要한 課題의 하나이며 繼續해서 研究改善 하도록 努力하여야할 것이다.

8. 結言

이외에도 河川行政上의 앞으로의 課題로서 重要한것이 많이있다.

예를들면 河川區域의 國有化問題, 河川臺帳, 低水管理問題 등이 있으나 平素에 優先 時急하다고 느낀 上記 몇가지 課題에만 言及하고 끝맺고져한다.

앞으로 時間이 許諾하는데로 其他問題點을 對象으로 記述해보고져한다.

會 員 證 發 給

本協會에서는 會員證을 가로29.5cm 세로 22cm 크기의 한글 및 英文으로 高級 罫紙를 印刷하여 많은 正會員에게 이미 發給한바 있으니, 希望하는 會員은 다음 要領에 依據申 請하시면 곧 郵送하겠습니다.

姓名은 한글과 英文으로 記入하고 發給手數料金 400원을 振替口座 서울 554 韓國水文 協會로 拂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